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추진단 운영규정

제정 2019.03.11.

개정 2019.12.16.

개정 2022.04.25.

개정 2023.07.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 운영」에 따라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이하 “본교”)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추진단(이하 “사업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은 “사업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세부업무) 사업단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 업무
2.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업무
3.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 관리 업무
4.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혁신 분야별 혁신팀 기반 사업추진 및 진도관리
5.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 관리 업무
6.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및 프로그램 등 운영 및 지원 등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혁신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단은 총장 직속 기구로 설치한다.

제5조(사업단장) 사업단장은 교무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3. 사업실적 보고
4. 사업비의 집행
5. 그 밖의 사업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

제6조(위원회) 사업단은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대학 혁신운영위원회, 혁신사업 자체평가위원회, 사업실무자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둔다.

제3장 사업단 운영

제7조(업무) 사업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련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
4.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8조(사업비) 사업단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로 운영한다.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기준에 따른다.

제5장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제9조(역할) 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계획의 수정-보완,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성과지표관리 적합성, 사업 시행과정 및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자체평가 기반 사업 진행 상황 및 성과 평가, 규정(지침) 마련 등의 사업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제10조(구성 및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은 내부 사업추진과 관련된 교무위원회급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와 재학생을 포함하여 10명内外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위원장은 둘 수 있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과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6.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7.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장 혁신사업 자체평가위원회

제11조(자체평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역할) 혁신사업추진성과(목표달성을, 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사업운영추진성과 등), 핵심-자율 성과관리 및 재정집행 실적, 차년도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구성 및 운영)

1. 혁신사업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추진단 및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그 밖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사업비관리위원회

제14조(역할)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계획 등 사업비 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제15조(구성 및 운영)

1. 사업비관리위원회는 본교 예산조정위원회에서 겸한다.
2. 그 밖의 사업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사업실무자위원회

제16조(역할)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실무적 영역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17조(구성 및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부서/스쿨별 직원 1인을 기준으로 총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위원장은 둘 수 있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과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6.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7.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장 기타

제1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19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 후 바로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자로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22년 4월 25일자로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23년 7월 7일자로 시행한다.